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297회 제1차 정례회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3. 6.

복지문화 위원회  
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3. 6.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정순옥 의원 등 9명
- 발의일자: 2023. 5. 26.(금)
- 회부일자: 2023. 5. 26.(금)
- 검토기간: 2023. 5. 30.(화) ~ 6. 5.(월)

### 2. 제정이유

- 달서구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이들의 자립·자활을 도모하고,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다.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·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라.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마. 자립지원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(안 제8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보호조치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(=보호종료아동)의 올바른 자립과 자활<sup>1)</sup>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“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”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 충동을 느낀 적 있다는 응답이 3,104명의 절반에 달하는 1,552명에 달하는 등 2018년 16.3%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져 이들에 대한 정서적·심리적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며,
- 202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5,915명 중 기초생활 수급대상은 2,134명(36.1%)으로 2017년 24.3%, 2018년 35.0%, 2019년 48.3%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자활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.
- 더불어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,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충청북도와 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의 자립지원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·시행하는 등 정책시행의 시급성, 필요성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또한 2023년 4월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460명이며, 달서구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85명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자립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과,

---

1) “자립”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, “자활”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. 정책적으로는 불안전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.

-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(월 40만원/60개월), 자립정착금(일시금 1,000만원), 공공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등의 기존의 지원정책과 달리 이들의 올바른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·생활·교육 등의 지원사업과 후견인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적 실효성과 필요성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고,
- 그 대상을 보호조치 종료 및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으로 함으로써 법령에 근거하여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아동복지법
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.

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, 아동을 상담·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. 다만,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·교육·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삭제 <2021. 12. 21.>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16조의3(보호기간의 연장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보

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(대학원은 제외한다)에 재학 중인 경우
2.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·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·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  - 1의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  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  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 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  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아동복지법 시행령

제38조(자립지원)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2. 아동복지시설(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
  3. 삭제 <2022. 6. 21.>
  4. 삭제 <2022. 6. 21.>
-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1.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
  2.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
  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